

# 『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』 핵심 설명서

### 1 기본정보

최고금리 (2025.04.01.기준, 연이율, 세금공제 전)	연 2.72%(DB) 연 2.72%(DC/IRP)		<ul><li>▷ DB : 12개월 기준</li><li>▷ DC/IRP : 12개월 기준</li><li>(상세 금리는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)</li></ul>		
가입대상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 가입자				
가입기간	■ 3개월, 6개월, 12개월, 18개월, 24개월, 30개월, 36개월, 60개월 ■ 디폴트옵션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이내 연, 월 일				
최저가입금액	1원 이상		최고가입금액	제한없음	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				
재 예 치	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				
분할지급	만기(중도)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 횟수 산정에서 제외 >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>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지급				
제한사항	담보 제공 불가				
	DB	DB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			
예금자보호	DC/IRP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 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			

# 2 유의사항

☞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,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광주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(☎1600-4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자계산방법	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(원미만 절사) 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신규일~만기일 전일)/365
중도해지이율	최저 연 0.01% (경과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적용)
특별중도해지	<ul> <li>특별중도해지 사유</li> <li>- 퇴직 및 연금지급,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</li> <li>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</li> </ul>



#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전용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-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 단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계약서류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제공합니다.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,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은 ①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④ 만 65세 이상 개인입니다.

##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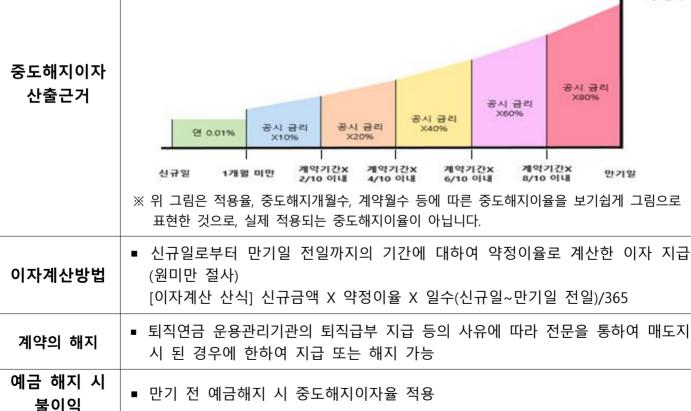
- 상 품 명 :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#### 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, 수령하시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		내	용				
가 입 대 상	■ 근로자퇴직	급여보장	법에 따	른 퇴직연	금 및 가	인퇴직겨	좌(IRP)	가입자	
상 품 유 형	■ 정기예금	■ 정기예금							
거 래 방 법	■ 영업점, 인	■ 영업점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							
가 입 금 액	■ 1원 이상	■ 1원 이상							
계 약 기 간		■ 3개월, 6개월, 12개월, 18개월, 24개월, 30개월, 36개월, 60개월 ■ 디폴트옵션의 계약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이내 연, 월 일							
이자지급방식	■ 만기일시지	급식 : 민	<u>난</u> 기 또는	중도해지	┃ 요청시	이자 지	급		
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								
	이 율	3개월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	30개월	36개월	60개월
	DB형	2.45	2.53	2.72	2.30	2.15	2.10	2.10	2.00
가입기간 . 이율	DC형/IRP형	2.45	2.53	2.72	2.30	2.15	2.10	2.10	2.00
(2025.04.01.기준,	C	이 율		36개월					
연이율, 세전)	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기예금2.10※ 이 예금의 이자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				지에				
	포시한 계	기시간 큰	이시끌를	· 역용합	느니.				

#### ■ 해당사항없음 만기 후 금리 (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만기 시 자동갱신) ■ 신규일(입금일)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(이율)로 계산한 금액 [이자계산 산식] 예금액 x 약정금리 x (예치일수/ 365) 만기이자 상품신규일 만기일 전일 산출근거 예금액 X 약정금리 X (예치일수/365) DB형, 퇴직연금 보유기간주1) DC형 / IRP형 디폴트옵션용 정기예금 1개월 미만 연 0.01%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10% 계약기간의 2/10 이내 중도해지금리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20% 계약기간의 2/10 초과 ~ 4/10 이내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80% (2025.04.01.기준,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40% 계약기간의 4/10 초과 ~ 6/10 이내 연이율, 세전)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60% 계약기간의 6/10 초과 ~ 8/10 이내 공시금리<sup>주2)</sup> X 80% 계약기간의 8/10 초과 주1) 보유기간 : 보유일수 / 계약일 주2) 공시금리 : 신규 가입일 당시 당행이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이며 우대금리 제외 ■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



#### ※ 특별중도해지사유

- 1. 가입자의 퇴직,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 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 - 나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 - 다.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- 라.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  - 마.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
- 3.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  - 가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- 나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다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 - 라. 수탁자의 사임
  - 마. 가입자 사망
- 4.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
  - 가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할 경우
  - 나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할 경우
- 5. 당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- 6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- ※ 특별중도해지이율

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 단, 4)와 6)의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의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- 1. 계약기간이 3개월, 6개월, 12개월인 계약 : 계약기간별 약정이율
- 2. 계약기간이 18개월, 24개월, 30개월, 36개월, 60개월인 경우
  - (1) 예치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: 12개월 계약기간 이율
  - (2) 예치기간이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: 24개월 계약기간 이율
  - (3) 예치기간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: 36개월 계약기간 이율

재예치

특별중도해지

- 1. 확정급여형(DB)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는 경우에는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금액으로 하여 당 초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가 가능합니다.
- 2. 확정급여형(DB)제도에서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3. 확정기여형(DC)제도 및 IRP(기업형, 개인형)제도에서 가입한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 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재예치됩니다.)
- 4.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 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 치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
- 5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 ҆҇҇҇҉みみ주은행

예금자보호여부	확정급여(DB)형 해당사항없음			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	확정기여(DC)형 개인퇴직계좌(IRP)형 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
연계· 제휴서비스	■ 해당사항 없음			
분할지급	<ul> <li>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</li> <li>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함.</li> </ul>			
세제혜택	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			
거래제한	1)공동명의 : 불가 2) 담보등록, 질권설정 및 양도 : 불가			
위법계약해지권	<ul> <li>□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수수료, 위약금 등의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□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			
자료열람요구권	<ul> <li>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■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588-3388, 1600-4000) 또는 인터넷홈페이지(www.kjbank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
#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전에 제공되는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'상품설명서' 및 '약관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이 금융상품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편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88-3388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lgbank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※ 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<ul> <li>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/ul>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